

1. 의결주문

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2214197, 2025.12.23. 공포)됨에 따라,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위원 구성, 과태료의 부과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,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 개정(2020.3.4.)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「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」의 수련병원 등 및 수련전문과목 지정기준을 의료법 체계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 개정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유형에 정신병원이 포함됨을 반영하여, 레지던트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 지정기준 중 하나의 수련전문과목을 지정받는 경우의 의료기관 유형에 정신병원을 추가함(안 제4조).

나. 「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 개정에 따라 수련병원등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취소 사유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 조문을 개정된 조문 체계에 맞게 정비함(안 제5조).

다. 「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 개정에 따라

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구성 인원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전공의단체
추천 4명,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 대표 4명 등으로 개정
함(안 제7조).

라.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범위 관련 인용 조문을 개정
된 법률 체계에 맞게 정비함(안 제12조)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제1호가목1) 중 “제외한다)”를 “제외한다), 정신병원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13조제2항제6호”를 “법 제13조제2항제8호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제2호 중 “3명”을 “4명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2명”을 “4명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6호 중 “5명”을 “2명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3호”를 “제7호”로 한다.

별표 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(단위: 만원)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가. 법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련규칙(법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련시간	법 제19조제2항제1호	100	200	300

에 관한 수련규칙은 제외한다) 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				
나. 법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의 규정에 따른 수련시간 등을 위반한 경우	법 제19조제1항제1호			
1) 전공의에게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1주일당 한도시간을 초과 하여 수련하게 한 경우		200	350	500
2) 전공의에게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연속 수련시간을 초과하 여 수련하게 한 경우		100	250	400
3) 전공의에게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연속수련 후 휴식시간을 주지 않은 경우		100	200	300
다.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신부 보 호 의무를 위반한 경우	법 제19조제1항제2호			
1)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의 규 정을 위반하여 임신중인 여성전공 의에게 출산전후휴가를 주지 않은 경우		200	350	500
2) 근로기준법 제74조제2항을 위 반하여 여성 전공의가 신청한 출 산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 도록 하지 않은 경우		200	350	500
3)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을 위 반하여 여성 전공의에게 유산·사 산 휴가를 주지 않은 경우		200	350	500
4)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을 위 반하여 출산전후휴가에 대해 최초 60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은 경우		200	350	500
라.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여성 전공의에 대해 휴가 종료후 휴가 전 동일한 수련과목에 복귀시키지 않은 경우	법 제19조제1항제2호	200	350	500
마.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신	법 제19조제1항제2호	200	350	500

한 여성 전공의 등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7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수하지 않고 야간 및 휴일근로를 하게 한 경우				
바.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른 육아·질병·입영 등에 의한 휴직 등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	법 제19조제1항제3호			
1) 법 제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소속 전공의가 신청한 육아·질병·입영 등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		200	350	500
2) 법 제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휴직이 종료된 전공의를 휴직전과 동일한 수련과목에 복귀시키지 않은 경우		200	350	500
사. 법 제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전공의가 휴가·휴직을 사용하였거나 수련연속성의 보장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등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	법 제19조제1항제4호	200	350	500
아.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련규칙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	법 제19조제1항제5호	200	350	500
자.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수련규칙의 변경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19조제1항제6호	200	350	500
차.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련계약서 1부를 전공의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	법 제19조제4항제1호	50	75	100
카. 법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폭행등 예방 및 대응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	법 제19조제1항제7호	200	350	500
타. 법 제1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전공의를 모집 및 선발할 때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준수하지	법 제19조제1항제8호	200	350	500

않은 경우				
파. 법 제1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전공의 모집 및 선발할 때 성별 에 따른 차별을 한 경우	법 제19조제1항제8호	200	350	500
하. 법 제11조의3제5항 후단을 위 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시정 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19조제1항제8호	200	350	500
거. 법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또는 업 무정지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 우	법 제19조제1항제9호	200	350	500
너. 법 제1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지도전문의에게 필요한 정기교 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	법 제19조제4항제2호	50	75	100
더. 법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이동수련 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19조제1항제10호	200	350	500
러. 법 제14조제2항의 자료를 제출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	법 제19조제2항제2호	100	200	300
머.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조사·검사를 거부·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법 제19조제3항			
1)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		100	150	200
2) 조사·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	200	200	200

부 칙

이 영은 202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조 및 제7조의 개정
규정은 202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 목의 지정기준) ① (생 략)	제4조(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 목의 지정기준) ① (현행과 같 음)
1. · 2. · 3. (생 략)	1. · 2. · 3. (현행과 같음)
② 레지던트 수련병원등 및 수 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	② ----- ----- -----.
1. 의료기관이 지정을 받는 경 우: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를 것	1. ----- ----- --
가.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하나의 수련전문과목을 지 정받는 경우: 다음의 기준 에 따를 것	가. ----- ----- ----- -----
1)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 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, 요양병원(「장애인복지 법」 제58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 서 「의료법」 제3조의2 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 은 제외한다) 또는 병원 일 것	1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, <u>정신병원</u> ----
2) · 3) (생 략)	2) · 3) (현행과 같음)

나. (생 략) 1) ~ 4) (생 략) 2. (생 략) ③ · ④ (생 략) 제5조(수련병원등 또는 수련전문 과목의 지정취소) ① <u>법 제13조 제2항제6호</u>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 1. ~ 4. (생 략) ② · ③ (생 략) 제7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 의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성 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라 임명하거나 위촉한 다. 1. (생 략) 2. 법 제1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사람: <u>3명</u> 3. 법 제15조제3항제3호에 따른 사람: <u>2명</u> 4. · 5. (생 략) 6. 법 제15조제3항제6호에 따른 사람: <u>5명</u> ② · ③ (생 략) 제12조(업무의 위탁) ① 보건복지	나. (현행과 같음) 1) ~ 4)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 ③ · ④ (현행과 같음) 제5조(수련병원등 또는 수련전문 과목의 지정취소) ① <u>법 제13조 제2항제8호</u>----- 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 제7조(위원회의 구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- <u>4명</u> 3. ----- --- <u>4명</u> 4. · 5. (현행과 같음) 6. ----- --- <u>2명</u>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 제12조(업무의 위탁) ① -----
---	---

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호부터 <u>제3호</u>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 1. ~ 3. (생략) ②·③ (생략)	----- ----- <u>제7호</u>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②·③ (현행과 같음)
--	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2 - 2435